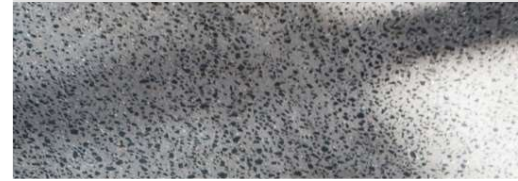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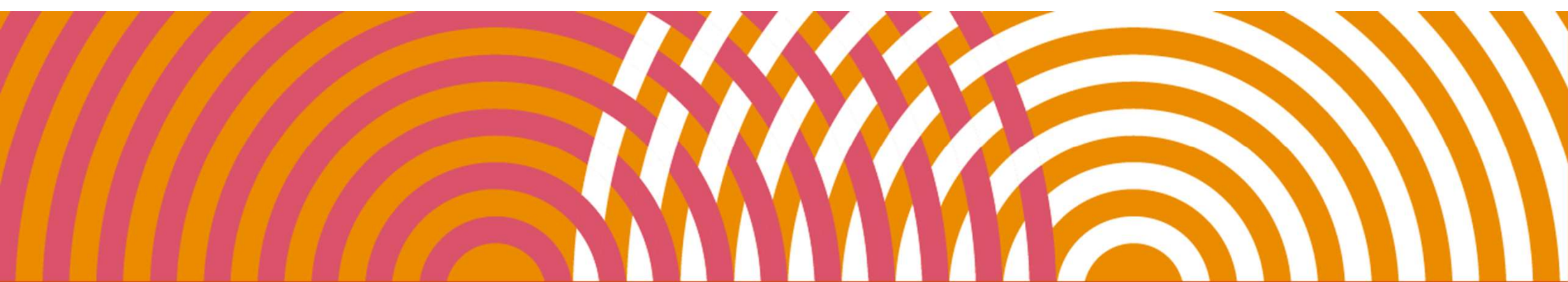
# 대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삼일회계법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KOREA LISTED COMPANIES ASSOCI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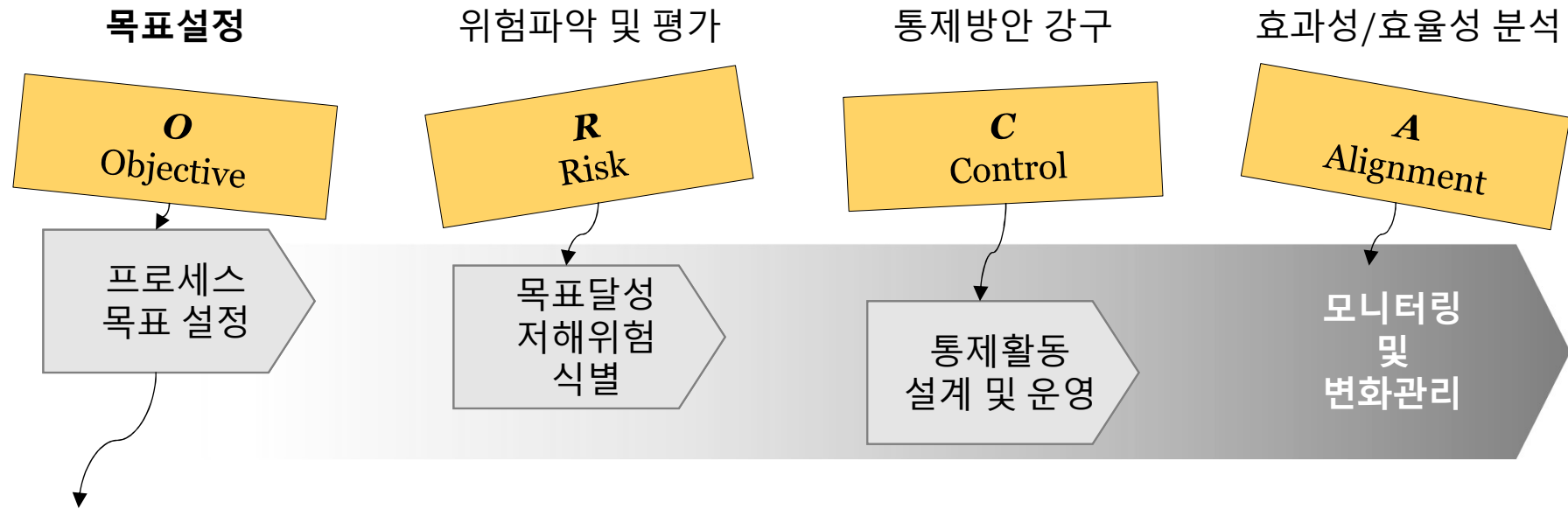


내부회계관리제도란?

1

# ORCA 모델

내부통제란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는 주로 재무보고 관련 통제활동에 집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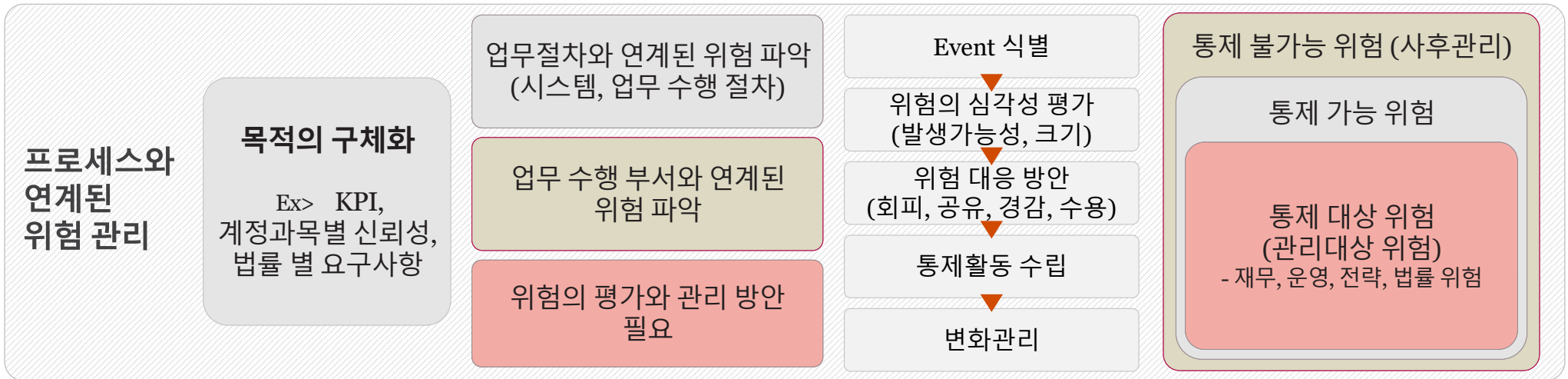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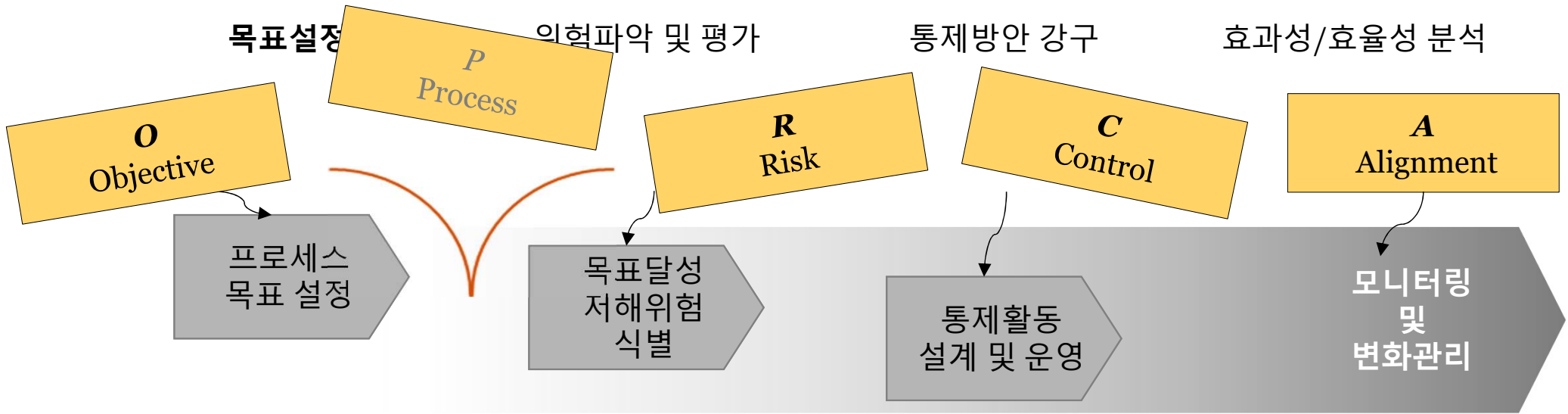
재무제표 작성 과정의 신뢰성(경영자의 주장을 만족) 확보?  
100억 이상(회계감사인의 중요성 금액)의 오류를 방지?  
1억 이상의 오류를 방지?  
1억 이상의 결산 오류의 방지

부정 위험 발생의 최소화?

- 재무보고에서 발생할 수 있는 risk는 무엇인가?
- 사업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risk는 무엇인가?
- 법률준수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risk는 무엇인가?

# 내부통제란? \_ Risk 관리

효과적인 내부통제 설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험관리는 프로세스와 연계되어 수행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 내부통제 일반사항

Q. Process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거래의 개시, 처리, 기록 및 보고와 관련된 절차
2. 프로세스에는 통제활동이 포함되지 않는다.
3. 프로세스에는 목적을 달성 못할 Risk가 존재한다
4. 재무보고와 관련 process에서는 F/S 왜곡될 risk가 항상 존재한다.
5. Process가 정의되지 않으면 Risk가 더욱 커진다

### 2번

- 프로세스는 업무처리의 모든 과정을 의미하므로 과정에서 수행되는 통제활동은 프로세스에 포함됩니다.
- 재무보고와 관련 process에서는 F/S 왜곡될 고유 risk가 항상 존재합니다. 다만 프로세스에 따라 고유 Risk의 정도가 클 수도 작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통제활동으로 해당 Risk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Q. 통제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프로세스에 존재하는 위험을 경감(Mitigate)하는 대표적인 수단이 통제활동이다.
2. 통제활동은 프로세스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3. 통제활동은 고유위험에 따라 강한통제/약한 통제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4. 통제활동을 통해 업무가 잘 진행되고 있음을(업무 목적 달성) 확인할 수 있다.

### 2번

- 위험에 대응 하는 방안은 4가지(경감, 수용, 회피, 공유)가 있고, 관리의 방안이 통제활동입니다.
- 통제활동은 프로세스에 수반되는 활동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 통제활동이 위험을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업무가 잘 진행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내부통제 일반사항

Q. 다음 내용을 프로세스와 통제활동으로 구분하시오.

- 제품 출하시에는 영업팀에서 확정하는 출하된 list를 기반으로만 제품을 포장한다.
- 회사의 매출 거래 기록이 영업시스템에서 회계시스템으로 매일 Interface되고 있다.
- 사내에서 개발된 급여 시스템에서 종업원들의 급여와 공제금액 및 원천징수세액 등을 자동으로 계산한다
- 회계팀장은 재고 담당 인원이 준비한 재고자산시스템에서 산출하여 작업한 월별 진부화 재고자산 분석표를 검토 하고 승인한다.
- 구매시스템에서 매입채무 기표절차에서 PO의 내역과 입고시의 수량 정보, invoice의 금액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기표가 이뤄지지 않는다

Process

Process

자동절차  
(Process < 통제활동)

IT 기반 통제

자동통제

## 내부통제 일반사항

Q. 앞 장에서 설명한 Risk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고유위험을 의미한다
2.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을 의미한다
3. 통제위험을 의미한다

### 1번

- “위험 평가”에서 의미하는 “위험”은 고유위험을 의미합니다.
- 통제위험은 통제가 적용된 이후에, 통제가 실패할 위험을(잘 작동하지 않을 위험)을 의미합니다.
- 통제활동은 고유위험의 크기에 따라 통제의 방식과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평가된 Risk에 대응하는 방안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 리스크를 회피
2. 리스크를 레버리지
3. 리스크를 수용
4. 리스크를 경감
5. 리스크를 이전

### 2번

- 위험 대응 방안은 회피, 공유, 경감(mitigate), 수용 4가지입니다. 모범규준(A) 원칙7의 중점고려사항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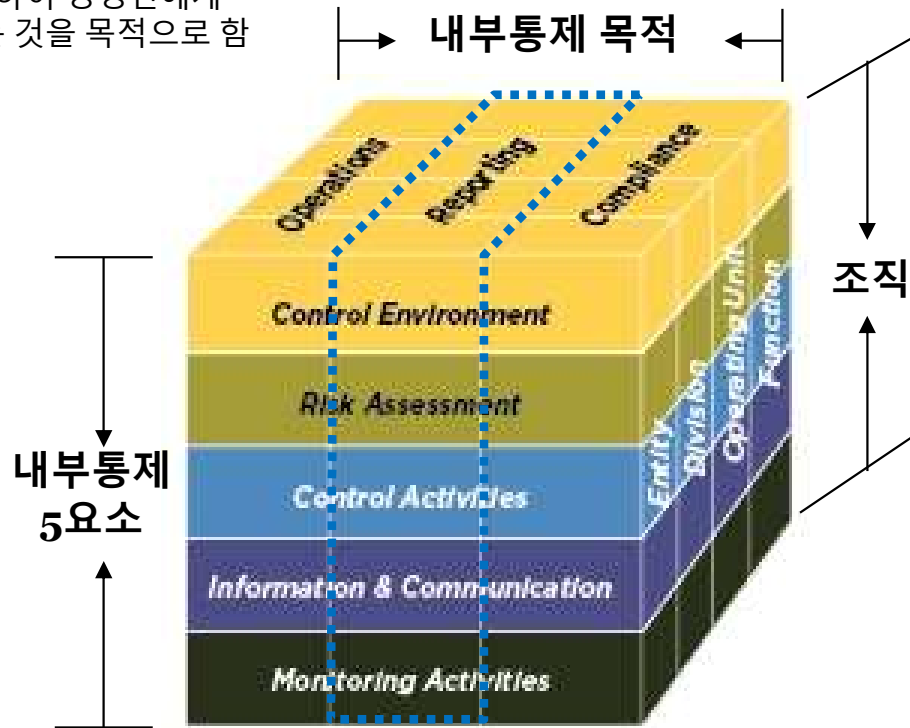
# 내부통제란? \_ COSO

내부통제는 회사의 전체 업무를 관리하는 “위험 관리 기반의 경영방식”이며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사의 목적 중 “외부 재무보고”와 관련된 내부통제에 대한 관리를 의미합니다.

“ 회사의 경영 방식이자 Risk 관리 방식의 방법론 ”

회사의 성과관리와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Risk 관리(Enterprise Risk Management)의 Framework와 방법론을 제시하여 경영진에게 Thought leadership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내부통제의 설계 및 운영을 위해 회사가 갖추어야 할 내부통제 구성요소 5가지 제시



\* 회사의 모든 조직에서 내부통제 목적과 5가지 구성요소간의 유기적인 구조가 잘 유지되어야 함

현재 COSO는 3가지 목적을 모두 Cover 하고 있음 (87개 중점 고려사항)

운영목적	외부재무보고	법률준수목적
내부재무보고	내부보고목적	

내부회계모범규준은 외부재무보고 목적에 한정하여 적용되고 있음 (75개 중점 고려사항)

외부재무보고
--------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Regulation

## 회사



## 감사인



외감법

준거 기준

외감법 준수 / 보고서 반영

준거 기준

외감법 준수 여부 확인

모범규준

선택적 준거 기준

설계/운영/평가 세부사항

평가 시 확인 사항

감사기준의 기반 개념

감사기준(검토기준)

참고 사항

준거 기준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외감법 변화사항

외감법 (8조)

외감법 시행령(9조)

외감법령 요구사항의 구성

	외감법 (8조)	외감법 시행령(9조)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장법인과 직전년도 말 자산 총액 천억 이상 비상장 회사(별도 기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외: 유한 회사 및 자산유동화회사 (법인세법 51조2 제 1항의 회사)</li> <li>연결(상장회사)</li> </ul>
내부회계관리규정 반영 요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부회계관리규정과 조직을 갖출 것</li> <li>회계정보의 식별, 측정, 분류, 기록, 보고 및 검증하는 방법</li> <li>회계정보를 보관 하는 방법 - 훼손방지</li> <li>관련 업무의 분장과 책임에 관한 방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규정 재/개정 절차 등</li> <li>운영실태 보고/평가 보고 기준/절차</li> <li>감사(위원회) 평가 결과 반영 방안</li> <li>연결F/S 작성에 필요한 사항</li> <li>규정 위반의 예방 및 사후 조치</li> </ul>
평가 및 보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표자 평가 및 보고 (감사위원회, 이사회, 주주총회)</li> <li>감사위원회 평가 및 보고 (이사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영실태보고서 포함 내용 제시</li> <li>평가보고서 포함 내용 제시</li> </ul>
검토 및 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S감사인의 검토 및 감사 책임</li> <li>외감법 8조 준수여부 및 운영실태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및 감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계감사기준 준수 명시 (감사)</li> </ul>

\* 외감법에서 요구하는 규정 반영 사항은, 상장협 발표 내부회계관리 규정에 세부 내용까지 모두 포함되지 않아, 일부 상세 내용은 내부회계관리지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대상

Q. 다음 중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회사를 모두 고르시오

1. 2022년말 자산 1000억 이상인 상장 회사
2. 2021년말 자산 1000억 이상이고 22년 상장한 회사
3. 2021년말 자산 1000억 이상인 상장회사
4. 2022년말 자산 1000억 이상이고 22년 상장폐지한 회사

### 1번, 4번

- 2022년 “**감사**” 적용대상은 자산 총액 1000억 이상인 상장회사입니다. 조건은 22년말 현재 상장이고, 21년말 자산총액이 1000억 이상을 모두 만족하는 회사입니다.
- 자산규모는 직전년도 별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상장여부는 기준연도말을 기준으로 적용하나, 명시적인 규정이 있지 않습니다.(금감원 구두 문의)

Q3.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기를 판단하는 경우 직전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나요? -상장협

- 그렇습니다.
- 외감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 기업을 판단합니다.
- 그리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 수준이 “검토”에서 “감사”로 강화되는 시기 역시 외감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직전연도 말의 자산총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연결기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역시 직전년도 별도 자산 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 및 공시

Q. 다음 중 사업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항목을 모두 고르시오

1. 내부회계관리규정
2. 내부회계관리제도 인력 현황
3. 유의한 미비점의 내역
4. 중대한 취약점의 개선 계획
5. 중대한 취약점의 개선 결과

3번

- 유의한 미비점은 사업보고서상 공시되는 내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모범규준 참고)

Q28. 회사가 회계연도 중 중요한 기업결합을 수행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에 인수(합병)한 사업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는지요? - 상장협

- 사업연도 중에 인수한 사업단위나, 매각 또는 중단사업 등 평가일 현재 폐지된 사업단위도 고려하여야 하나,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가능(평가·보고 적용기법 문단 54).
  - 인수(합병)한 법인 또는 사업단위에 대해 현실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 매각 또는 중단한 사업이 직전 평가기준일 이후 중요한 변화 없이 단기간 동안 운영된 경우
- 회사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사실과 해당 부문에 관한 정보를 운영실태보고서에 포함하고, 해당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평가·보고 적용기법 문단 55).

## 내부회계관리제도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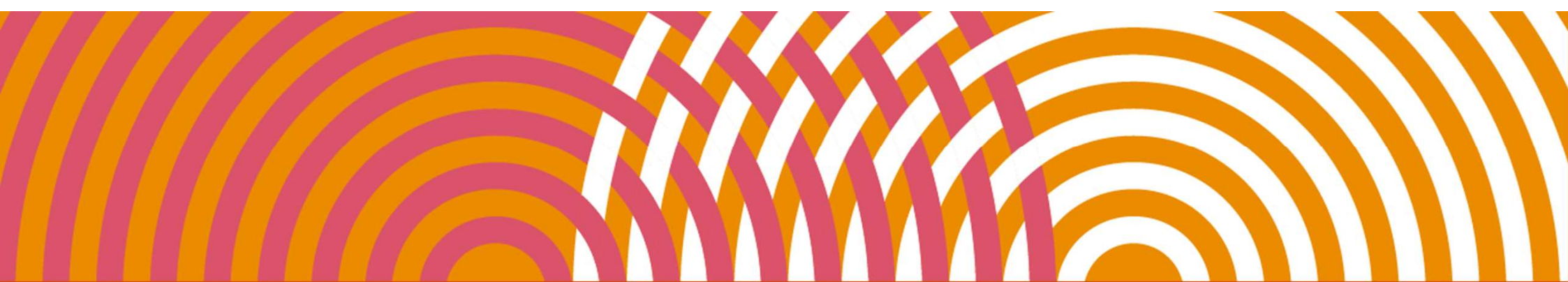
이에 회사는 재무제표 작성과 연관된 프로세스의 통제활동을 문서화하고, 관련된 통제활동의 증빙을 관리하고 이를 매년 검증할 수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감사를 수검하여야 합니다.



**감사인이 아니라 “ 회사 스스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하고 사업보고서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모범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란 회사가 회사의 재무제표가 GAAP에 따라 작성·공시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운영하는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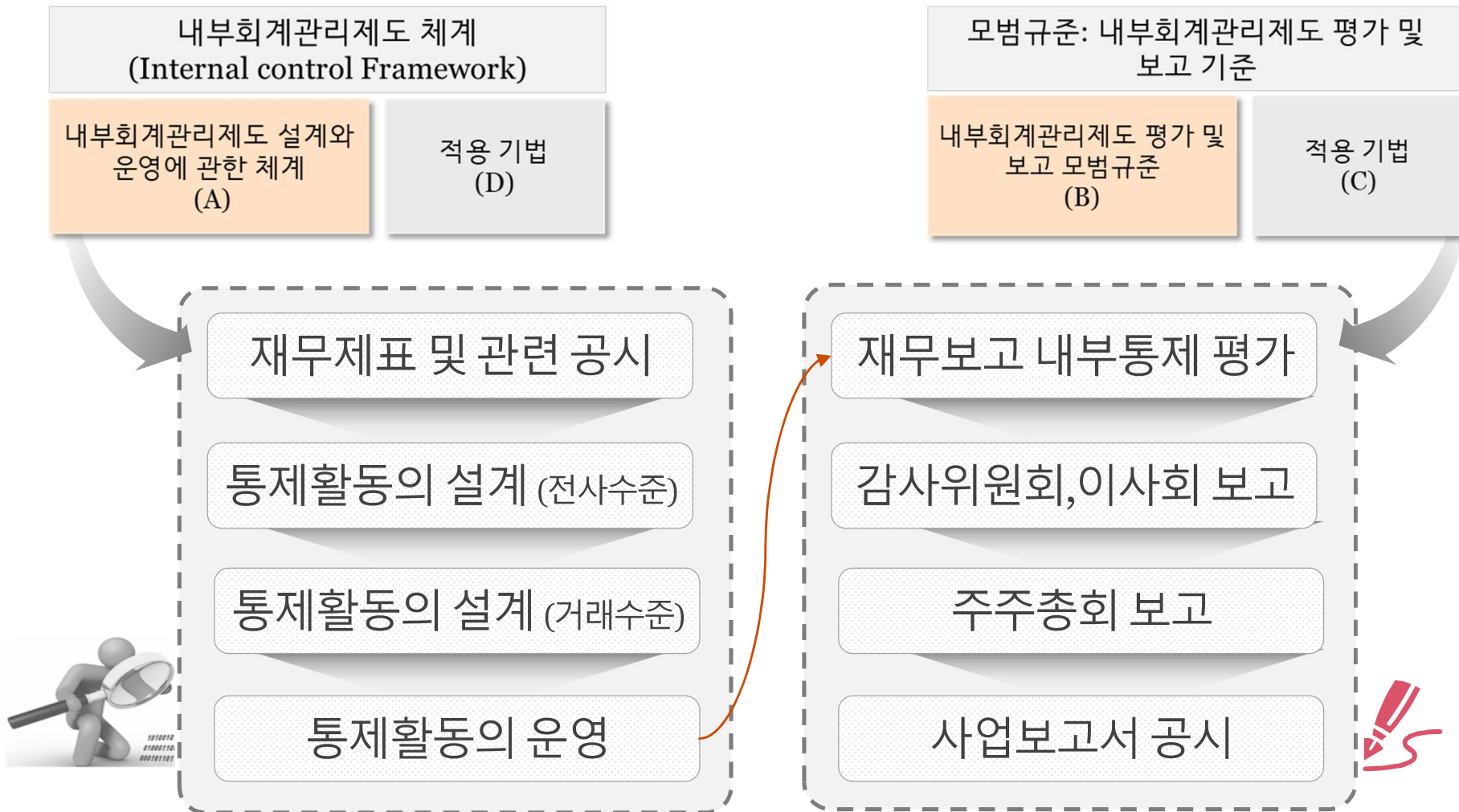
##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설계 및 운영)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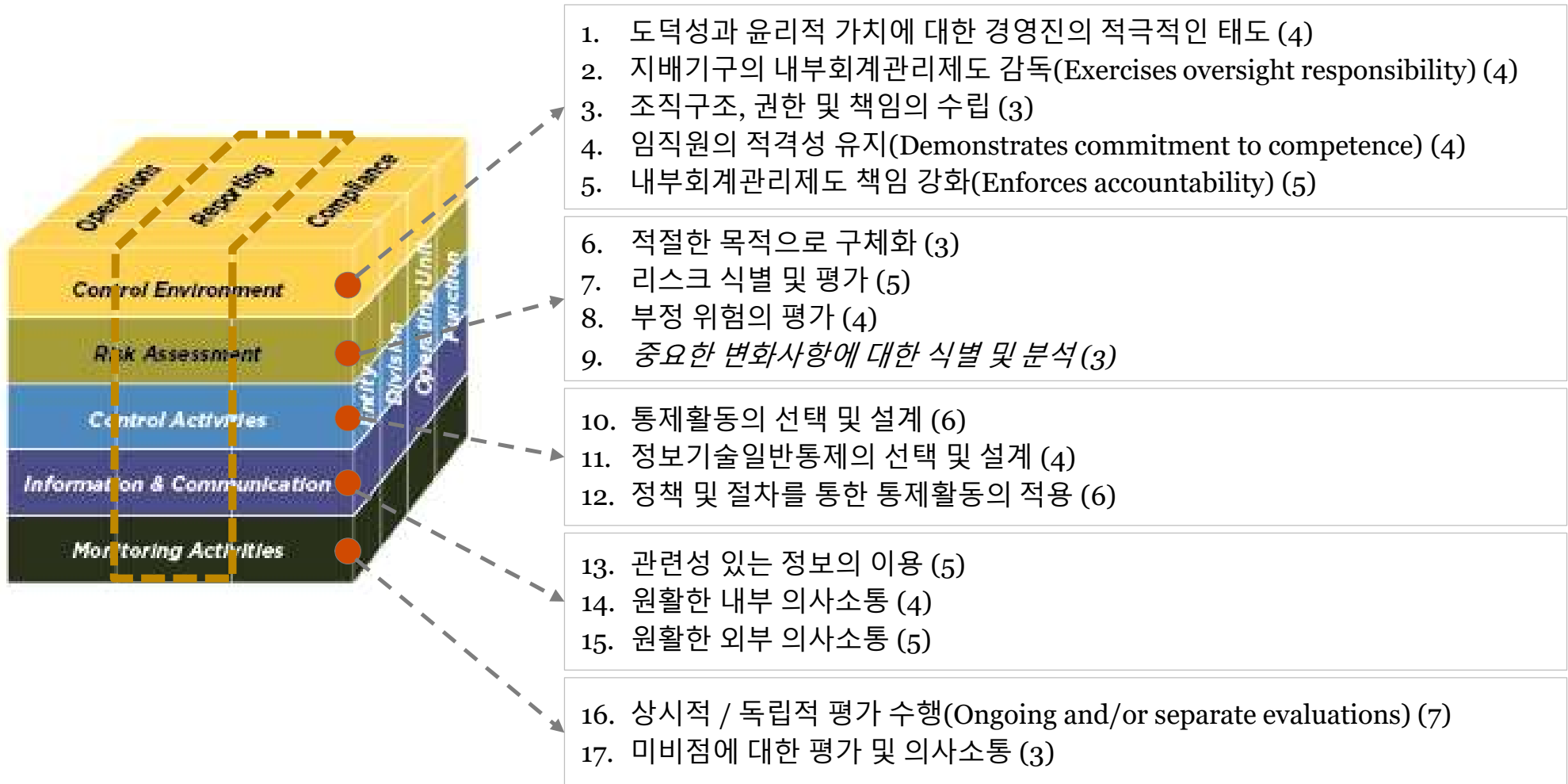
# 모범규준 개정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규정 구성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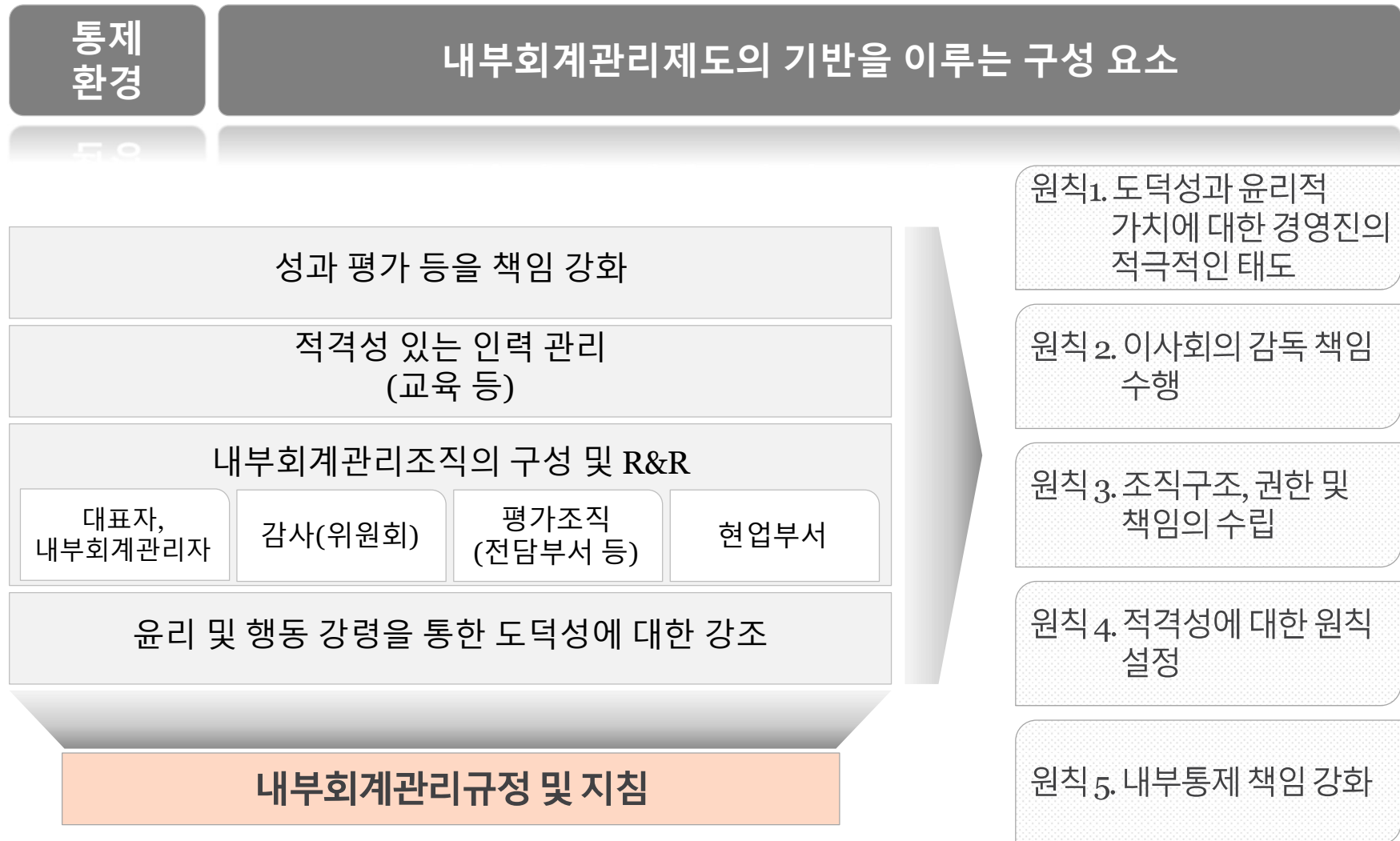
# 모범기준 개념체계\_원칙, 중점고려사항

2013년 updated COSO는 변경 불가한 항목으로 5개 component와 17개 원칙을 제시함. 각 원칙별 고려할 중요한 사항으로 75개의 중점고려사항을 제시함.





# 통제환경\_통제구성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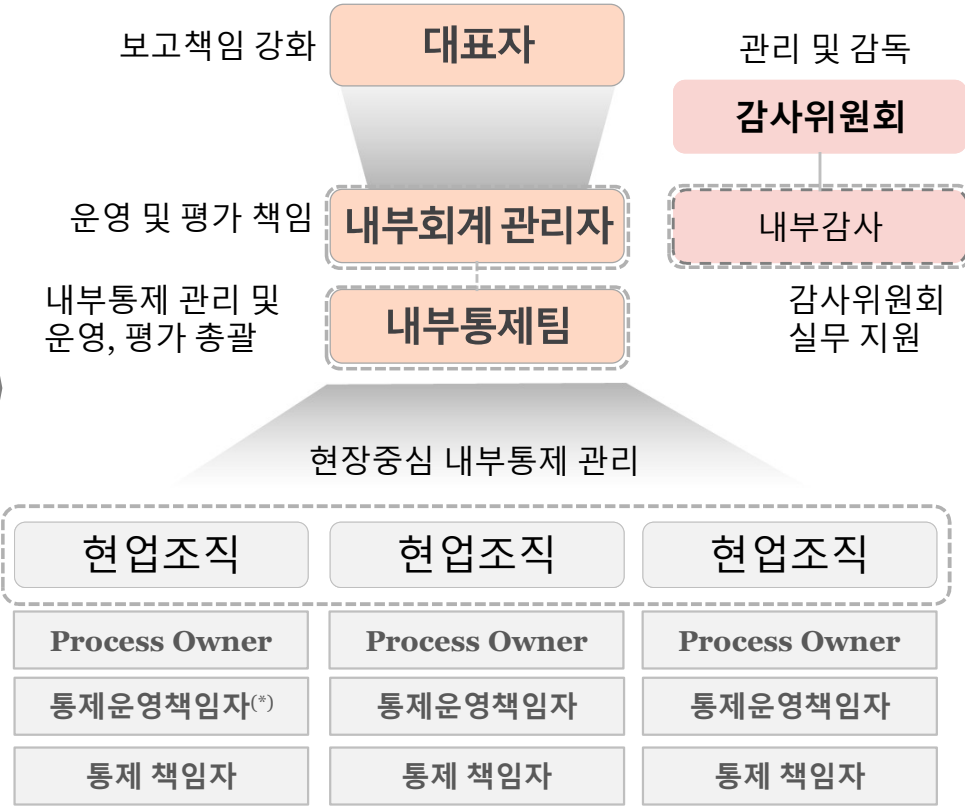


# 통제환경\_내부회계관리조직의 구성

- 내부회계관리조직의 구성

**원칙 3** 경영진은 내부회계관리제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사회에 감독을 포함한 조직구조, 보고체계 및 적절한 권한과 책임을 정립한다.

- 외감법:**
  -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관리 / 운영하는 조직을 갖출 것 (법 8조 1항)
  -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 감사위원회의 운영실태 평가 및 문서화, 이사회에 대면 보고 (령 9조 5, 6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 경영진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지닌 인원으로 구성된 전담부서를 이용
-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 감사위원회 산하에 이를 보좌하고 감사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내부감사 부서를 설치



(\*) 통제운영책임자: 통제활동의 설계와 운영의 책임을 지는 인원(모범규준 C set)

## 내부회계관리조직

Q.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감독 조직으로 부적절한 곳을 모두 고르시오

1. 내부고발제도를 담당하는 내부감사팀
2. 연결결산을 수행하는 연결회계팀
3. 회계결산을 수행하지 않는 자금팀
4. 감사위원회 산하의 내부통제전담팀

### 2,3번

- 별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경우,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연결확장 시 부적절하며, 연결의 회계처리가 별도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 자금관련 통제가 포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적절하지 않으며, 회계적인 전문성에 challenge 당할 수 있음

Q13.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원칙2에서는 이사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감독을 강조하고 있음. 이사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직접 관리·감독하여야 하는지요? -상장협

- 이사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감독이 제시됨 (평가·보고 모범규준 문단 94).
- 가능한 경우에는 이사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직접 관리·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회)에 일부를 위임이 가능함
- 설계·운영 개념체계와 설계·운영 적용기법에서는 외감법에서 명시된 요구사항[감사(위원회)의 운영실태 평가와 이사회 대면 보고]으로 인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내부감사등의 감독책임을 감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고 제시(설계·운영 개념체계 문단 39.1 및 A9).
- 따라서 대부분의 회사에서 감사(위원회)에 위임하여 관리하고 있음. - 동사항을 이사회 및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반영

## 내부회계관리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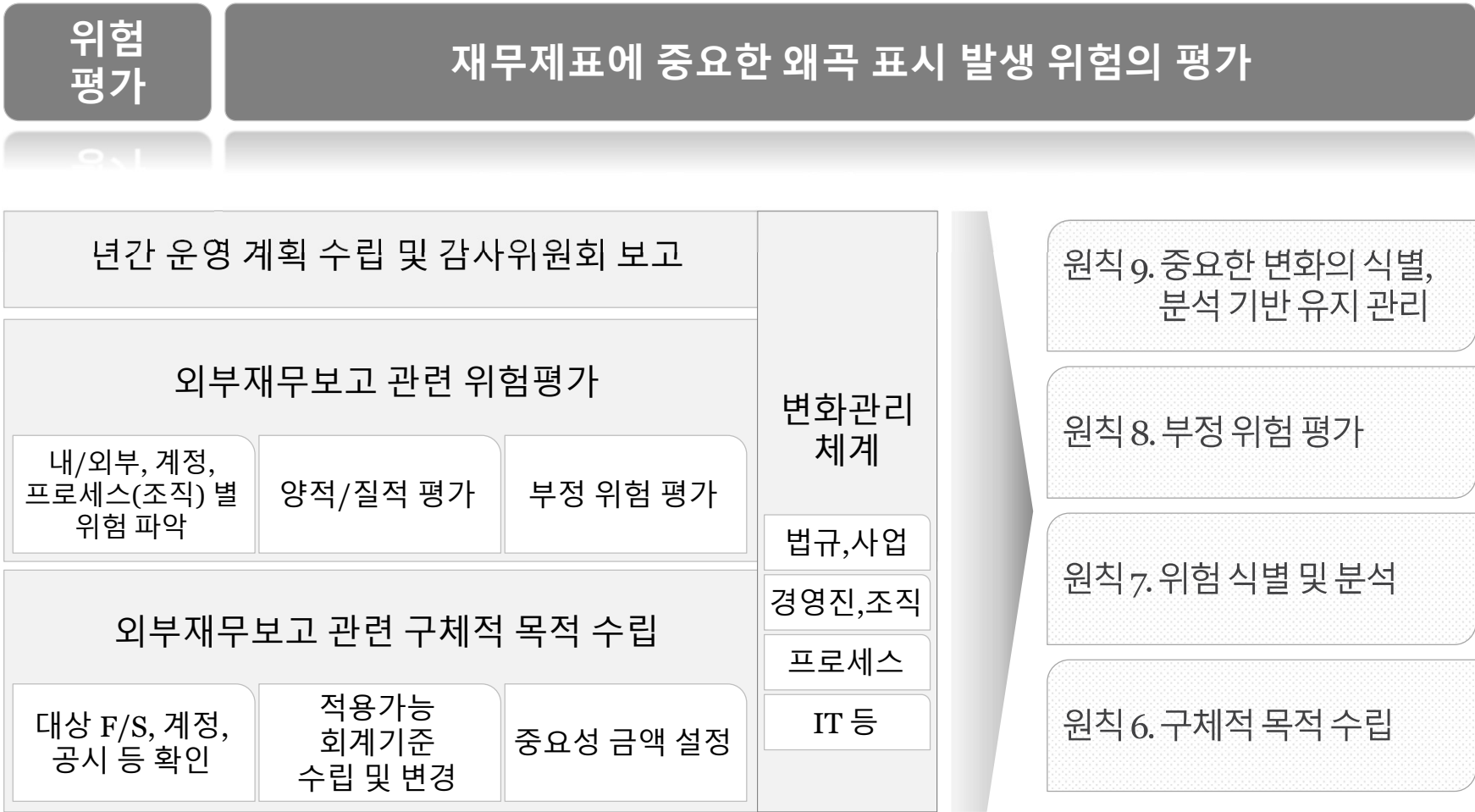
Q14. 모범규준에서 이사회와 관련하여 제시하는 내부회 관리감독, 전문성, 독립성 등에 관련된 사항은 모두 감사(위원회)로 해석할 수 있는지요? -상장협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감사(위원회)로 위임한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하여 설계·운영 개념체계에 기술된 "이사회"라는 문구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설계·운영 개념체계 문단 A11)
- 이에, 설계·운영 개념체계에서 제시하는 이사회 관련 전문성, 독립성 역시 동일하게 감사(위원회)에 적용됩니다.

Q29.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를 위해 반드시 전담조직(내부감사팀, 내부통제팀 등)을 구성하여야 하나요? -상장협

- 평가 전담조직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지만, 외감법에서 요구하고는 내부회계관리/운영하는 조직은 필요(공시 대상).
- 동 인원은, 객관적 평가를 위해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지닌 인원으로 구성된 내부통제전담부서나 내부감사부서 이용을 규정(설계·운영 적용기법 문단 164)
- 다만, 평가를 위해 별도의 임시조직(Task Force팀 등)이나 자가평가를 수행하는 것도 가능함. 단 보완조치 필요(평가·보고 적용기법 문단 19).

# 위험 평가





# 위험 평가\_중요성 선정 및 Scoping

## 중요성 산정

중요성

매출 1% or 총자산 등 고려

금감원 양정기준  
감사인 중요성  
금액

수행 중요성

50~75%로 조정

보수적 관점의 관리 방안

## 위험평가(Risk Assessment)

### 계정과목

고유특성	Risk Ev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계추정</li> <li>회계처리/원칙의 복잡성</li> <li>특수관계자 거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경상적 Issue 발생</li> <li>금융감독원 강조사항</li> <li>금액의 중요한 변경</li> <li>회계기준/원칙의 변경</li> </ul>

회계정보 변화관리

### 프로세스

고유특성	Risk Ev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련부서의 수</li> <li>시스템화 정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로세스 / 시스템 변경</li> <li>신규 Biz 도입</li> <li>미비점 발생 이력</li> </ul>

Control 변화관리

Fraud Risk 고려 (Fraud Risk Assessment 결과 고려)

계정별 Risk Rating (High/Medium/Low)

## 내부통제 운영계획 수립 및 보고

Risk Rating을 고려한 내부통제 운영계획 수립(안)

	High	Medium	Low
내부통제 평가(자체/외부)	Scope-in		
보고 절차	감사위원회 및 대표자 보고 수행		



# Scoping

Q1. 감사인이 식별한 유의적인 거래유형, 계정과목 및 공시(이하 '유의적인 계정 등')가 경영진 scoping과 다르면 미비점에 해당하는지요? - 한공회

- 경영진이 모범규준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식별한 경우, 감사인과 다르다는 점 자체로는 미비점에 해당 안됨
- 그러나, 이로 인해 핵심통제활동이 누락되었다면 이는 회사의 위험평가 절차에 미비점이 있음을 시사할 수 있음
- 만약, 구축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 평가과정에서 발생하였다면, 이는 회사의 모니터링에 미비점이 있음을 시사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거래 수준 통제활동을 평가하지 않고 이러한 전사적 수준의 통제활동의 미비점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이지 않다고 결론 내리지 않는다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149)

Q. Scoping과 관련된 설명 중 잘못된 것을 모두 고르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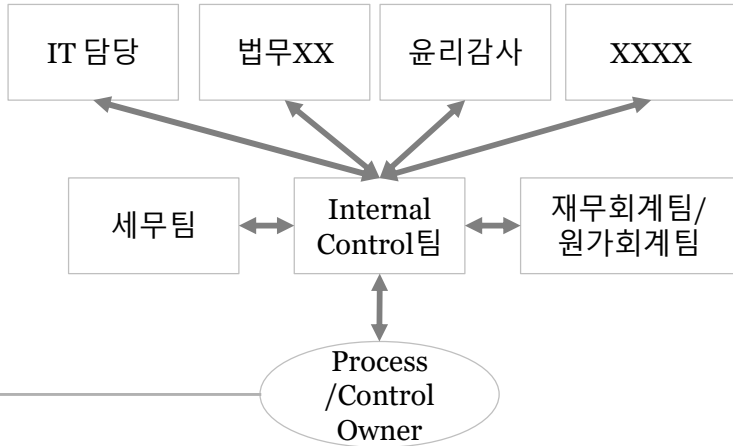
1. 공시용F/S보다는 시산표를 기준으로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Scoping을 통해 관련된 프로세스를 확인하고 계정 연관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중요성 금액 초과 계정은 scoping에서 제외할 수 없다.
4. Scoping시에 주석까지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 4 → 2 → 3 → 1번

- 공시용 F/S를 고려하되, 여러 계정이 섞여 있는 공시용F/S보다는 시산표 기준이 바람직함.
- 중요성 금액 초과 계정은 scoping에서 제외할 수 없음(과거 검토 시에는 조건하에 제외 가능)
- Scoping시에 주석까지 고려하여 관련 프로세스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위험 평가\_ 변화관리체계

**원칙 9**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를 식별하고 분석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유지 관리한다.



기초 자료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월별 F/S 및 결산 자료 검토</li> <li>주요 투자심의 자료</li> <li>주요 재무보고 이슈 검토</li> </ul>		
협의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T/ 법무/진단/구매 등 정기 협의</li> <li>부서별 변화관리 담당자 지정</li> </ul>		
	<table border="1"> <tr> <td>시스템 변경사항</td> <td>프로세스 변경 사항</td> <td>조직 및 인력 변경사항</td> </tr> </table>	시스템 변경사항	프로세스 변경 사항
시스템 변경사항	프로세스 변경 사항	조직 및 인력 변경사항	
내부통제 담당자 Feedba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부통제 Risk 책임소재 명확화</li> <li>Process 변화 시점에 IC팀에 공유</li> <li>지속적 변화식별 절차 병행</li> </ul>		
시스템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시적인 시스템 변화 사항 모니터링 체계 수립 및 운영</li> </ul>		

## 변화사항 별 위험평가 수행

변화와 관련된 고유 위험		변화의 정도	
계정과목 고유위험 (既 평가결과)	프로세스 고유위험 (既 평가결과)	프로세스 변경 정도 (재무관점)	신규 프로세스 여부

## 내부회계관리제도 변화사항 별 설계 평가 수행

## 변화사항 이력관리

- 설계 평가는 매년 수행
- Baseline 이후 변화가 없거나 미미함을 확인하는 것으로 설계 평가를 대체 가능
- 즉, 효과적인 변화관리체계의 수립과 운영되는 경우 설계 평가 대체 가능
- 변화 요소: 사업, 프로세스, 시스템, 조직 등 (개념체계 원칙 9 참조)

## 변화관리

Q. 변화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1. 변화관리과정에서 설계 적정성을 확인한 경우라도 설계평가는 따로 수행하여야 한다.
2. 변화관리의 주체는 통제활동 수행 부서이다.
3. 변화사항에 대한 통제 평가의 주체는 독립적인 인원이 수행하여야 한다
4. 매년 설계 평가하는 것이 변화관리보다 효과적이다.

### 1번, 4번(?)

효과적인 변화관리체계를 유지하는 경우 매년 수행하여야 하는 설계평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 변화관리체계에는 변화사항에 대한 파악/확인 절차 + **“독립된 인원의 설계평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매년 모든 통제를 설계평가 수행하는 것이 반드시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증빙 취합의 경우)

Q. 다음 변화사항 중 가장 중요한 변화로 예상되는 순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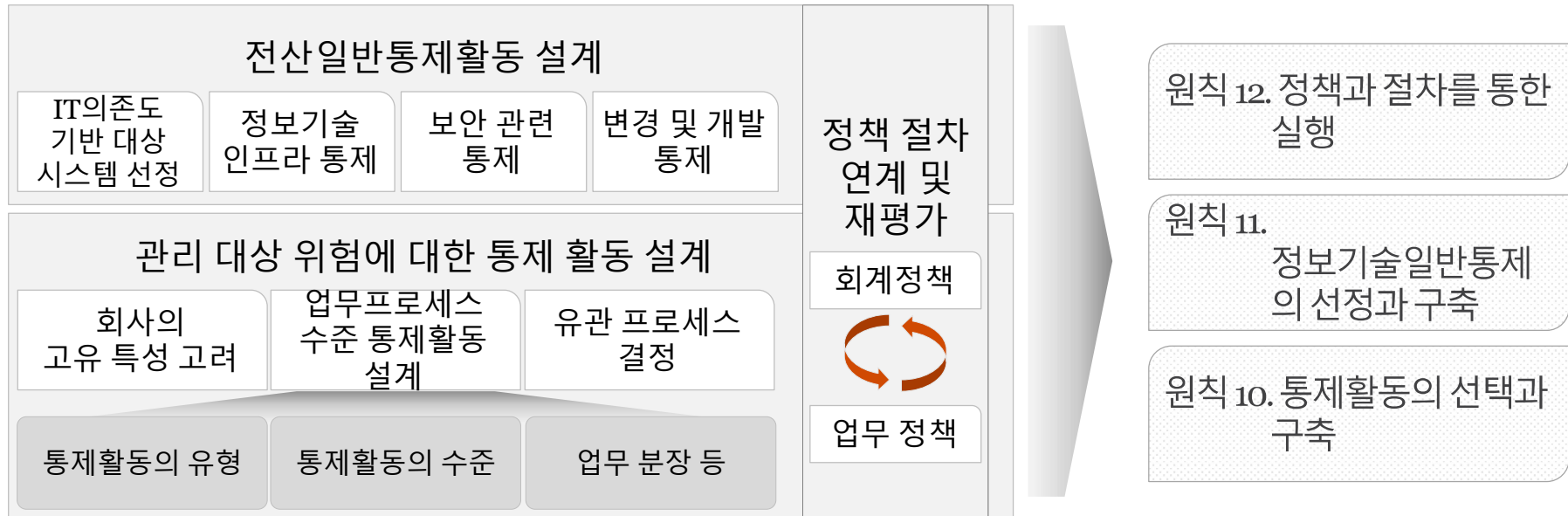
1. 통제담당자의 변경
2. 회사 ERP의 변경
3. 회사 신규 사업분야
4. 합병

### 4 → 2 → 3 → 1번

- 명확한 정답은 존재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합병은 매우 중요한 건이나, 통상 해당 사업년도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가능함 (사업보고서에 제외를 명시)
- ERP는 많은 변화가 발생함
- 신규 사업의 경우 금액적 중요성에 따라 제외될 수 있음
- 매년 발생하는 변화사항임.

# 통제활동\_통제구성요소

## 통제활동      관리 대상 위험에 대한 통제 활동의 설계 및 유지 보수





## 통제활동

Q. 다음 통제활동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회계팀장은 회계팀원이 검토한 자금일보를 checklist  
를 통해 적정성을 확인하고 승인한다.

1. 통제활동 수행자는 회계팀원이다.
2. 통제활동 운영자는 회계팀장이다.
3. 회계팀장의 상위직급자인 재무본부장이 통제 책임자이다
4. 재무본부장이 프로세스 책임자이다.

### 1번

- 통제활동 수행자와 운영자는 동일한 의미이며, 동 통제활동은 승인 통제활동으로 승인을 수행하는 인원인 회계팀장이 통제활동 수행자이다.
- 통상 통제 책임자는 통제 수행자의 상위 직급이다.
- 통상 프로세스 책임자는 통제책임자 혹은 상위 직급이다.

Q16. 프로세스 책임자, 통제 책임자, 통제 운영자의 명확한 정의는 무엇인가요? -상장협

- “통제운영자(Control Operator)”는 본인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실제 특정 통제활동을 수행하는 인원을 의미하며, “통제수행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 “통제책임자”는 통제활동을 수행하는 방식을 결정하고, 통제활동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음을 일상적으로 확인하는 등의 관리를 수행하는 인원을 의미하며 평가·보고 적용기법 문단 77의 “통제운영책임자(Control Owner)”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 “프로세스 책임자(Process Owner)”는 통제책임자보다 상위자로서, 회사의 주요 사업 및 업무처리 절차를 구분한 단위인 특정 프로세스(특정 통제활동이 포함되는 광의의 업무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인원을 의미합니다.

## 통제활동

Q. 다음 핵심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모두 고르시오

1. 리스크의 크기가 낮은 핵심통제활동은 매년 평가하지 않을 수 있다.
2. 강력한 통제활동이 주로 핵심통제활동으로 선정된다.
3. 재무제표 결산과 근접한 프로세스일수록 핵심통제일 가능성이 높다.
4. 감사인과 회사간 핵심통제는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1번, 4번

- 핵심통제활동은 매년 평가하여야 함
- 약한 통제활동은 잔존하는 risk가 큰 경우 핵심통제활동으로 구분되기 어려울 수 있음
- 프로세스에서 F/S 결산 시 혹은 근접할수록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통제일 가능성이 높음
- 4번: 우측 참고

Q18~20.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시 핵심통제를 꼭 선정하여야 하나요? -상장협

Q2. - 한공회

- 핵심통제 선정을 강제하지는 않지만 핵심통제를 선정하는 것이 평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임 (평가보고 적용기법 문단 89 참조)
- 회사의 통제는 보완적으로 혹은 중복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므로, 모든 통제를 평가하기 보다는 핵심통제를 선정하여 평가하는 것이 효율적임.
- 이에 따라, 재무제표와 주요 계정의 없어서는 안되는 통제활동을 핵심통제로 선정함.
- 따라서, 낮은 위험을 가진 핵심통제도 매년 평가 대상에 포함하여야 함.
- 선정한 핵심통제가 감사인과 상이할 수 있으나, 이 자체로는 미비점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이는 위험평가절차나 모니터링에 미비점을 시사할 수 있음. 만약, 감사인이 선정한 핵심통제에서 중요한 취약점등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핵심통제 선정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통제활동

Q12. 출발점(Baseline)의 설정은 문서화가 필요한 항목인지요?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장협

- 출발점(Baseline)이란 내부회계관리제도 통제활동의 설계의 효과성에 대한 최초 평가가 이루어진 시점
- 내·외부에서 발생한 중요한 변화로 인해 통제활동의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새로운 출발점을 설정(설계·운영 적용기법 문단 155 및 156).
- 즉,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최초로 구축한 시점을 출발점으로 기록하고, 이후 통제활동의 변경 & 설계 적적정 평가 후 해당 일자로 출발점을 업데이트.(평가·보고 적용기법 문단 76).
- 출발점 관리를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변화 관리체계를 근거로 매년 수행하여야 하는 설계의 적정성 평가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음.(설계·운영 적용기법 문단 83).

Q11.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의 문서화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며, 문서화의 적정성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상장협

- 통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통해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함. (평가·보고 적용기법 문단 62).
- 외부 재무보고목적 상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유의한 업무프로세스의 재무보고관련 통제활동을 포함 (평가·보고 적용기법 문단 63), (평가·보고 모범규준 문단 45). - 운영/법률목적 제외 가능
- 설계 문서는 구체적으로 기술.
- 통제기술서가 널리 사용되며, 업무흐름도, 업무기술서, 업무분장표 등을 통제기술서 보완 목적 활용(평가·보고 적용기법 문단 81~87).
- 통제기술서 세부사항 (평가·보고 적용기법 문단 64~77)

## 통제활동

Q41. 지점 등 복수의 장소에서 수행되는 동일한 통제  
의 효과성 평가는 각 장소(지점) 단위로 수행하나요? -  
상장협

- 동질적 통제(혹은 공통통제)라고 판단한 경우  
일괄적으로 평가가 가능함.
- If not 각각 설계/운영 평가 수행
- 10개 지점의 월별통제:  
동질적통제(모집단 120개) vs 개별통제(10개 지점별  
평가)
- 동질적통제 판단 시 고려사항 – 해당사항 클수록 동질적
  - 동일한 정책과 절차, 동일한 시스템과 프로세스 적용
  - 통제수행자의 역량 및 권한의 유사성
  - 통제수행에 요구되는 판단/추정이 높지 않은 경우
  - 자동통제인 경우 – 동일한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설정

Q4. 복수 사업장의 통제가 동질적이라면, 감사인은 설  
계효과성 테스트를 한 사업장에서만 수행하여도 되는  
지요? -한공회

- 통제활동이 동질적이라면 설계효과성 테스트(추적조사  
등)는 중앙 또는 대표적인 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동질적이라는 근거 필요)
- 동질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별로 평가 수행

## 통제활동

Q17. 결산 프로세스에서 중요 결산 항목을 대부분 포함하여 이를 작성, 검토, 승인하는 통제활동을 설계, 운영하는 경우 미비점에 해당하는지요? -한공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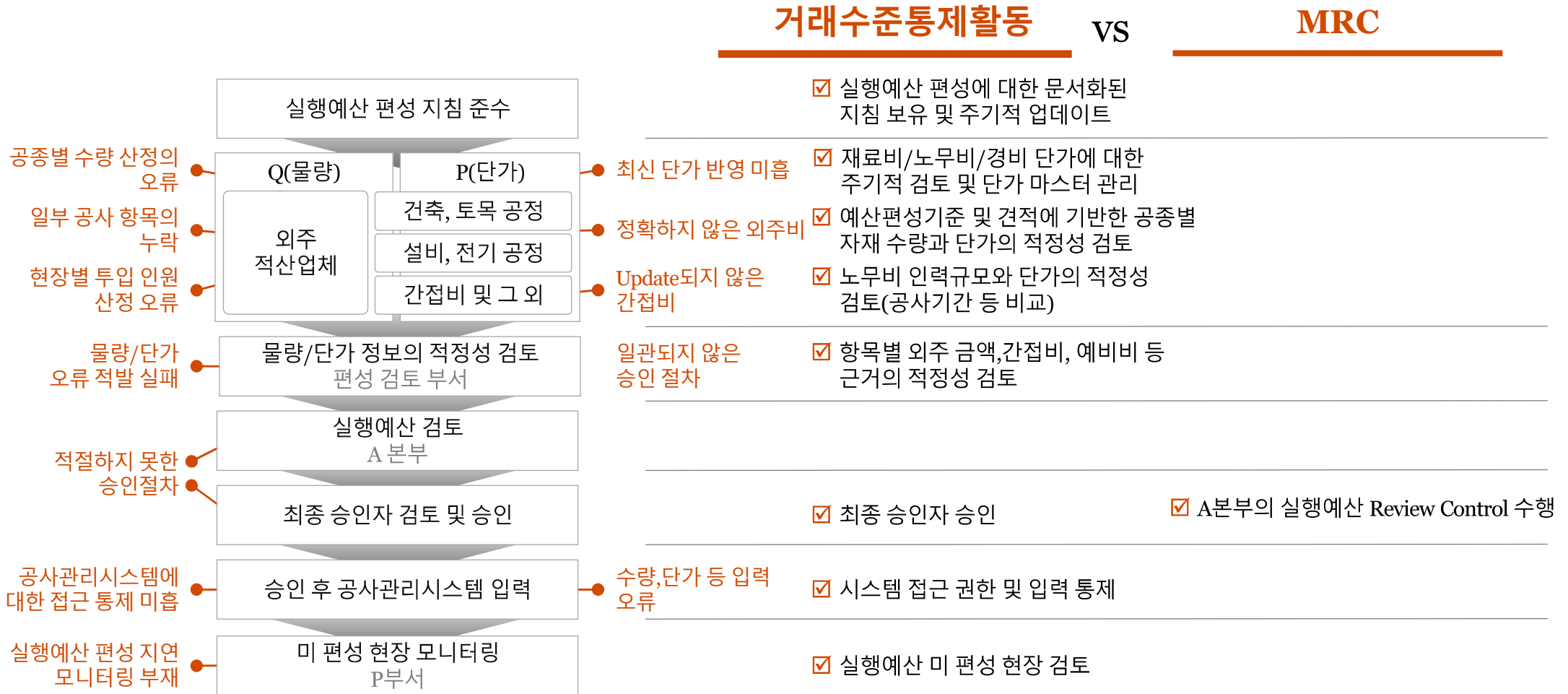
- 체크리스트만으로 각 항목에 대한 통제활동이 충분하게 수행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는 없음
- 유의적인 회계추정이나 특수관계자 거래 등과 같이 위험이 높은 항목에 대한 통제는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업이 체크리스트 통제 적용 시, 감사인이 고려할 사항
  - 결산조정금액의 정확성/완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충분한지
  - 이상항목(outliers)을 식별, 조사, 해결하는 절차가 설계되었는지
  - 결산 체크리스트 작성 빈도가 충분한지
  - 체크리스트 작성에 이용되는 내/외부 정보가 관련성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지

Q20. 자동으로 수행되는 자동계산, 인터페이스는 통제에 해당하는지요? - 한공회

- 통제활동 해당여부는 관련된 위험을 mitigate할 수 있느냐에 따라 판단한다.
- 위험을 경감시키는 정도에 따라 약한 통제와 강한 통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약한 통제는 Non-key로 구분
- 자동계산은 시스템이 담당자를 대신하여 기초데이터를 취합하여 계산을 수행하여 관련된 위험을 mitigate 하므로 통제활동에 해당한다. 관련된 위험(수작업 계산의 위험)의 정도에 따라 Key 혹은 Non-key로 구분이 가능하다.
- Interface의 경우, 단순히 Data를 전송하는 경우 proces에 해당하고, 전송된 데이터에 대한 record count, control totals, hash totals, 유효성 체크를 자동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통제활동으로 구분함.
- 통제활동의 설계평가 시에는 정확한 기초데이터(자동계산 및 interface 대상 data)의 사용여부, 자동기능의 적정성의 고려가 필요함 (ITGC 연계 고려 가능)

# 통제활동\_MRC

## 거래수준통제활동 vs MRC – 실행예산 편성





# 통제활동\_MR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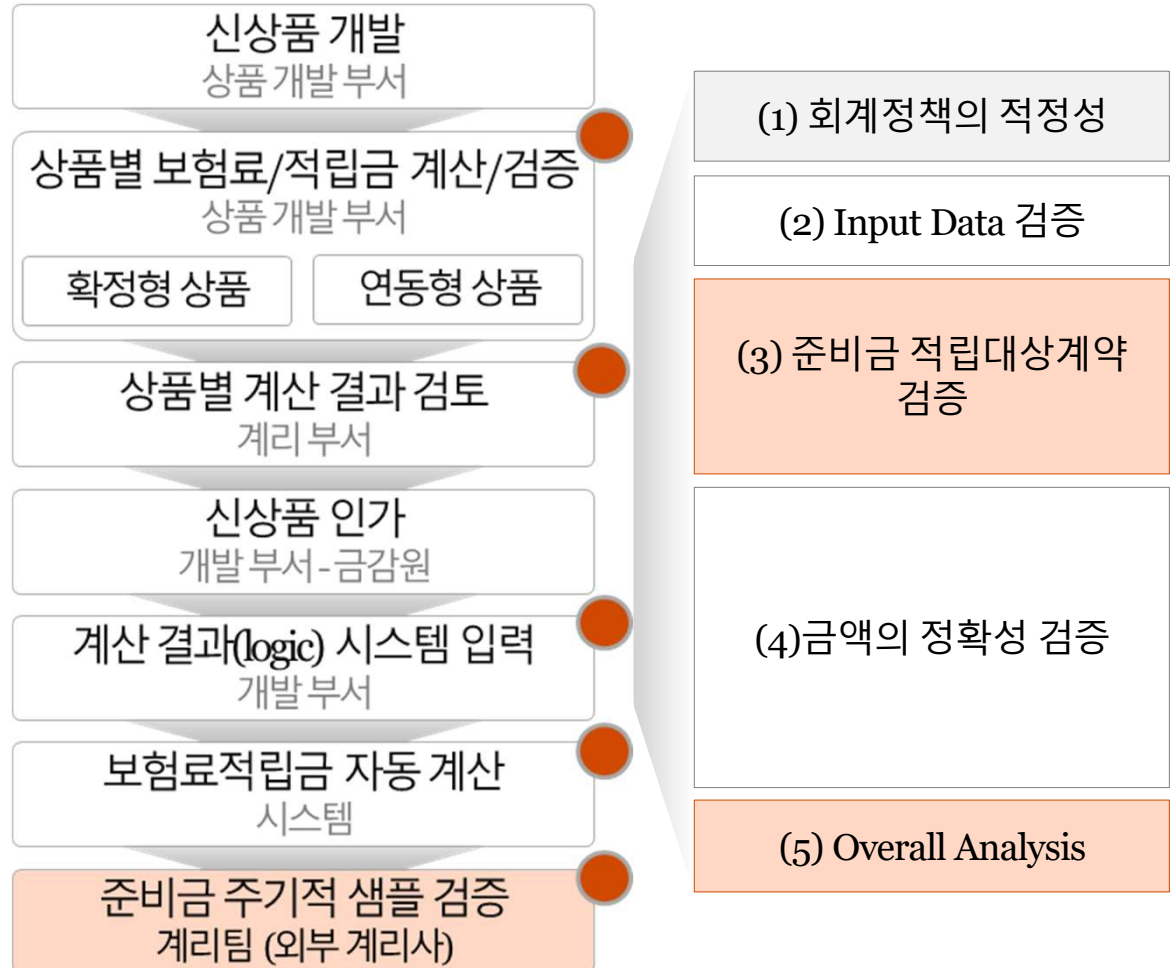
- 거래수준통제활동 vs MRC – 보험료 적립금

## 거래수준통제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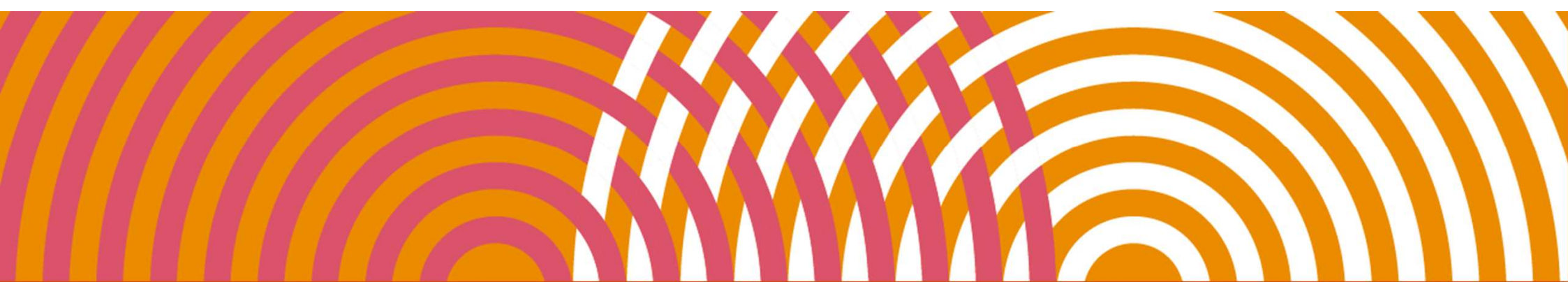
통제 No.	통제명
RV-01	• 관련 규정의 변경 사항 확인
RV-02	• 기초 서류 검증. • 공시이율 등 주요 가정 검증
RV-03	• 보험계약상태 샘플 검증(Cut-Off Test)
RV-04	• 적립 대상 계약 건수 및 분류 기준 검증
RV-05	• 금리 확정형 상품의 계산 정확성 검증
RV-06	• 금리 연동형 상품의 계산 정확성 검증
RV-06	• 특이 상품에 대한 수작업 검증
RV-07	• 수치차 분석을 통한 준비금 적정성 검증

VS

## MR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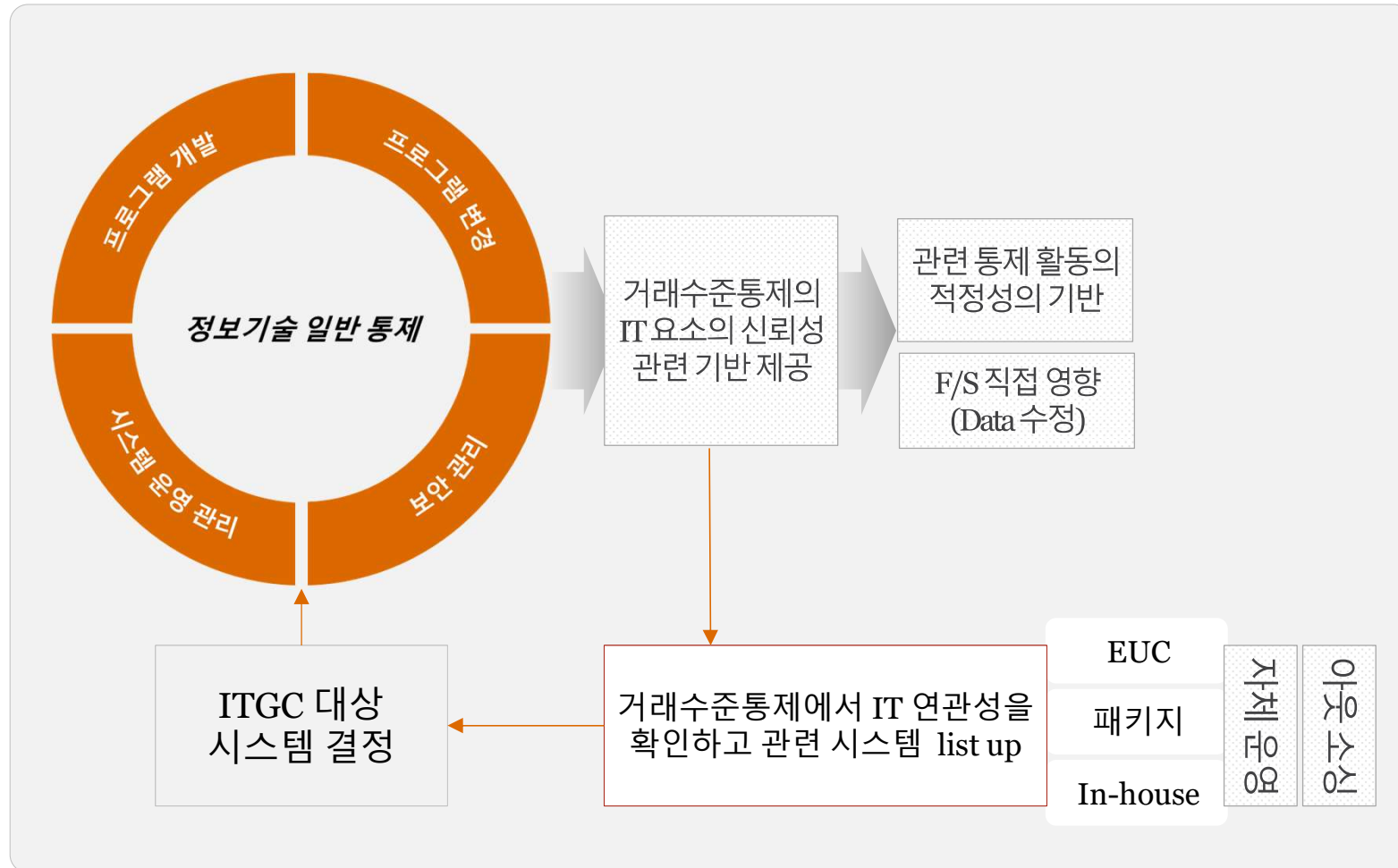
# ITGC Scoping

# 3

# ITGC\_Ov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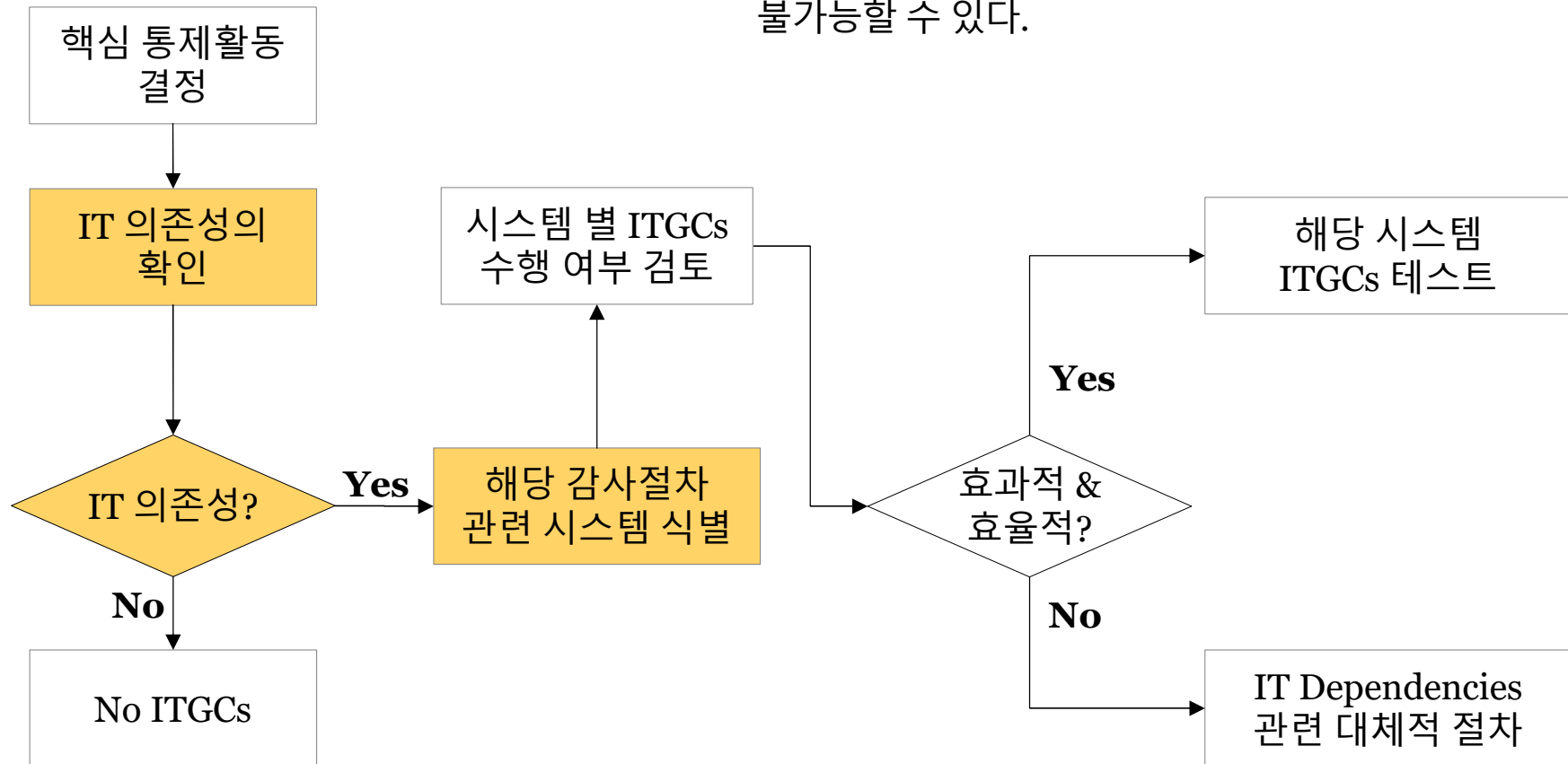
원칙 11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목적 달성을 지원하는 정보기술일반통제(ITGC)를 선정하고 구축한다.



# In-scope 시스템 선정

- 전산화 정도가 클수록 IT 관련 항목은 증가한다.
- ITGC test 없이 IT 관련성 항목을 개별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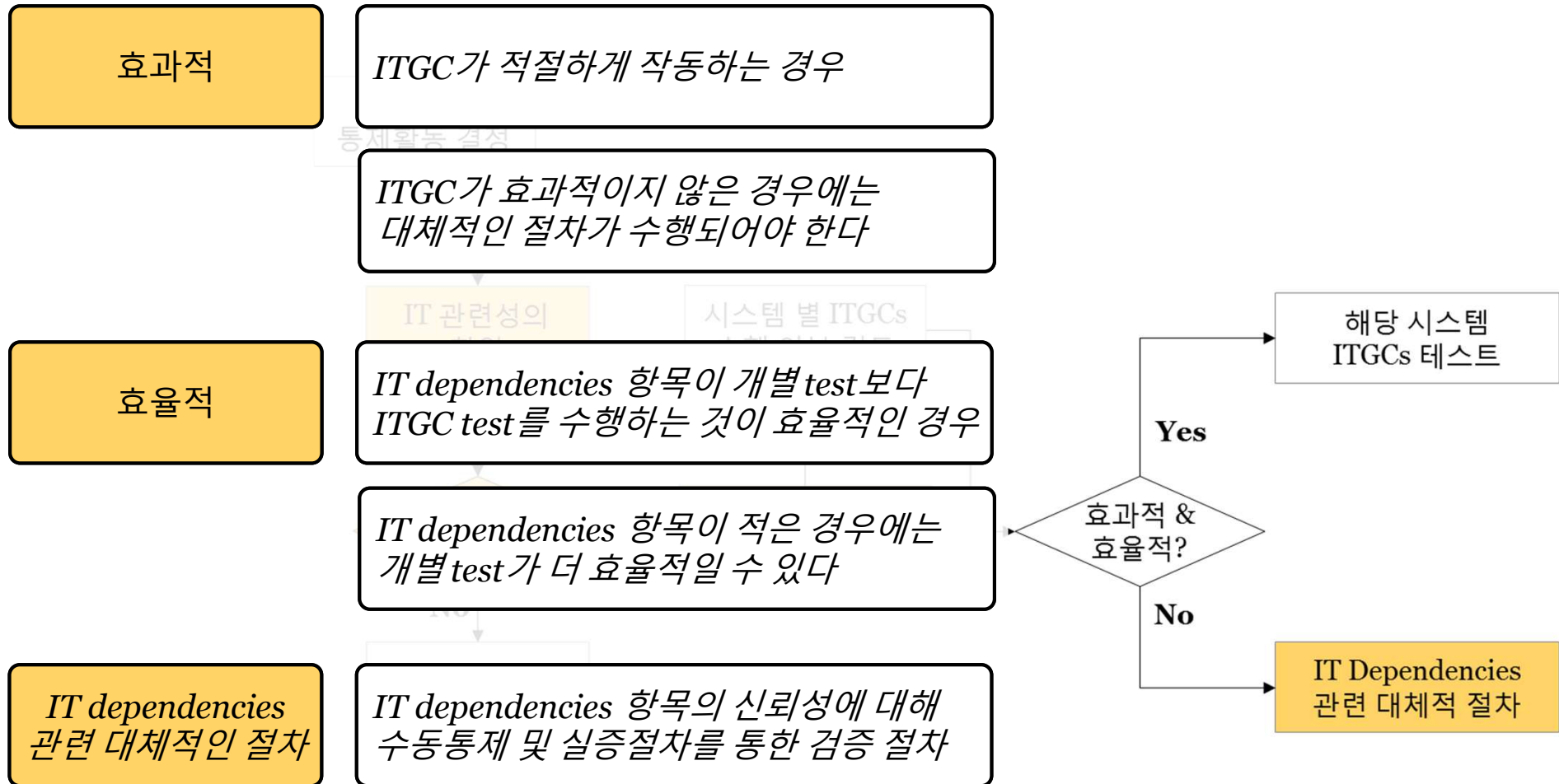


# In-scope 시스템 선정

## IT Dependencies

	유형	Description
<b>IT Dependencies</b>	<b>자동통제 (Automated Controls)</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사의 정책 및 절차가 강제되도록 시스템 내에 설계된 통제</li> </ul>
	<b>보고서 (Reports)</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스템에서 생성되는 보고서</li> </ul>
	<b>계산 (Calculations)</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T시스템에서 수행되는 자동화된 계산</li> </ul>
	<b>인터페이스 (Interfaces)</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데이터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다른 시스템으로 전송하도록 프로그램 된 로직</li> </ul>
	<b>보안 (Security)</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egregation of Duties(업무분장)</li> <li>Restricted Access(접근제한)</li> </ul>

# In-scope 시스템 선정 시 추가 고려사항





# ITGC\_In-scope system 선정

**1 전제조건**

- 통제활동 별 IT의존항목 매핑
- 통제활동 별 유관 시스템 매핑

**(1) 통제활동 별 IT의존항목 식별**

통제유형	IT Dependency (IT의존항목)				
	자동통제 (Automated Controls)	보고서 (Reports)	계산 (Calculation)	보안 (Security)	인터페이스 (Interfaces)
자동통제	✓		✓	✓	✓
IT의존 수동통제		✓			✓

**2 Scoping Approach**

- PLC 설계 현황과 명확한 연계
- 통제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In-scope 시스템 선정

**3 추가 고려사항**

- IT일반통제를 지원하는 Supporting Tool도 scoping 대상에 포함 (Ex. 배포관리, DB접근제어 Tool 등)

**(2) IT일반통제 검토대상 시스템 확정**

통제활동	통제유형	KFA	KFC	KFJ	KEE	Tool1	Tool2
통제활동 01	자동	✓			✓		
통제활동 02	수동						
통제활동 03	수동						
통제활동 04	자동		✓				
통제활동 05	IT의존		✓				
통제활동 06	자동		✓				
통제활동 07	수동						
통제활동 08	자동				✓		

내부회계 대상 In-Scope Applications

**4 In-scope system 변화관리**

- In-scope 시스템 선정에 대한 합리적이고 명확한 회사의 논리 필요
- 프로그램 개발 도메인과 연계

# In-scope system 선정 관련 주요 이슈

## In-scope system의 적정성 (판단의 문제)

### System 목록 관리

- 회사가 사용하는 시스템 현황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된 자료 제공 필요
- 통제기술서에 표현된 시스템명과 일치해야함
- ITGC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활용되는 supporting tool도 함께 고려

### Scoping 근거 마련

- 통제기술서의 IT Dependencies와의 연관성이 불완전한 경우
- 각 시스템 별 In-scope 또는 scope out에 대한 근거 관리가 미흡한 경우

### 감사인 협의 시점

- In-scope 결정에 따라 ITGC의 범위가 크게 흔들릴수 있으므로 최대한 빠른 시점에 확정이 필요함
- Scope out을 원하는 경우 감사인을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 마련 필요

### 기타 고려사항

- Scope 증가에 따른 회사 및 감사인의 업무 부담은 동일하므로 무조건 대상을 늘리는 것이 좋은 방향은 아님
- 대상 시스템이 늘어나도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ITGC 통제의 표준화 필요